

의안
번호

49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9. 0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97호
- 다. 제출일자 : 2025. 08. 18.
- 라. 회부일자 : 2025. 08. 27.

2.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 12. 31.에서 2030. 12. 31.로 5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나.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신설(안 제10조제3항)
-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신설(안 제11조)
- 라.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 12. 31.로 5년 연장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7. 10. ~ 2025. 07. 3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결 제2023-793호)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2항제5호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에 관한 심의 항목을 신설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충족 여부와 의무적립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제5호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금융기관별 예치금액·약정기간·이자율·예상 이자액 등 세부내역을 심의자료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운용 심의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안 제10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 제10조제9항에서는 위원회 회의 실적, 주요 심의사항, 위원 구성·운영 등 심의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제9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신설〉	⑨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 채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 하였음.

〈안 제11조제1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 -----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자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안 「별표」 개정은 기금 존속기한이 2025. 12. 31.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비적 성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특성에 비추어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존속기한을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제출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